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67
----------	-----

제출연월일 2013. 3. 5
제출자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사용료, 예약, 사용료 면제에 관한사항
- 나. 사용료의 게시, 사용료 징수방법,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 다. 시설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에 관한 사항
- 라. 사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 마.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3. 근거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36조
- 나. 「지방재정법」 제31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사항 : 비용추계서(별첨)
-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라. 입법예고 : 2013. 1. 16. ~ 2. 5.(의견 없었음)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등에 위치한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 가.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영테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종사자”란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내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캠핑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④ 관리자는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예약) 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현장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다음 날까지 울산광역시중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캠핑장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제155회-본회의제2차부록)

없으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67)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3. 5.(화)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3. 3. 5.(화)
- 위원회심사 : 2013. 3. 13.(수)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시설사용료, 예약, 사용료 면제에 관한사항
- 사용료의 게시, 사용료 징수방법,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 시설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4.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 「지방재정법」 제31조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권수)

본 조례안은 중구 입화산 등에 위치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본 조례안의 제1조 중 중복문자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필요함.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등에 위치한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을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등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정정 검토바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조례안 제1조 중 중복된 문자를 정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등에 위치한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을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등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수정가결함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입화산 등에 위치한 울산광역시중구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캠핑장 ----- ----- -----